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105호
2. 발 의 자 : 김문수 의원
3. 발의일자 : 2017. 9. 28.
4. 회부일자 : 2017. 10. 12.

II .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III . 주요내용

1.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2. 각급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5조).

3. 교육감은 수요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4.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을 각급기관에 배정할 경우에 출퇴근 거리를 감안하여 가장 근거리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안 제7조).
5.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8조).
6. 교육감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사업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
7. 교육감은 업무능력이 우수한 중증장애인 또는 활동이 우수한 모니터단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음(안 제10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조례안 참고)
3. 기 타 :
 - 입법예고(2017. 10. 17. ~ 10. 24.) 결과 :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7년 9월 28일 김문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105호로 발의되어 2017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청 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채용 현황과 조례안 제정 취지면에서의 검토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을 말하는 것으로¹⁾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는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중증장애인에 대해 동 법 제3조제2항 단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²⁾

1)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장애인 채용실적이 없고,³⁾ 교육공무직의 경우에만 고용장려금과 고용부담금을 통해 매년 일정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교육공무직 경우에는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 학생들의 일정 인원을 인턴십으로 활용한 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표1] 2014~ 2017년 중증장애인 채용 현황 및 관련 예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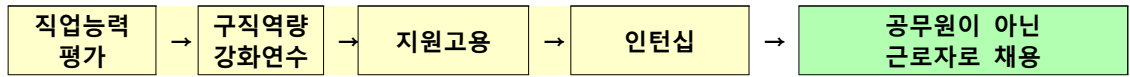
연도	중증장애인 수 (연평균 인원)	예산 (본예산, 단위: 천원) ⁴⁾	
		고용장려금	고용부담금
2014년	49명	1,108,800	2,551,576
2015년	125명	1,302,000	2,939,540
2016년	208명	2,880,000	1,580,531
2017년 (8월 기준)	191명	3,384,000	363,360

[표2] 2014~ 2017년 「희망일자리 사업」 현황⁵⁾

연도	사업예산 (천원)	희망일자리 단계별 인원수(명)		
		지원고용	인턴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채용
2014년	41,632	41	40	25
2015년	62,222	51	50	29
2016년	62,022	45	40	20
2017년	63,380	34	32	2018. 3월 (예정)

3) 지방공무원의 경우 2014~2017년까지 매해 1명의 중증장애인이 합격하였으나 모두 발령 전 임용을 포기하였음.
 4) 서울시교육청 본청을 비롯한 산하 직속기관과 각급 학교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된 금액임.
 5)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채용 시 담당 직무는 시설관리업무보조, 사서업무보조, 카페업무보조, 특수교육 업무보조, 급식업무보조, 교무업무보조, 행정업무보조 등이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채용(1년, 일4시간) 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사용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 인건비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 흐름도>



대상	고 3			
시기 (기간)	여름방학전 까지	10월중 (2일)	10월~11월중 (3주 일4시간)	11월~12월중 (6주 일4시간)
인원	70명	60명	50명	40명
임금 (훈련비)			일 17,000원 (공단 지원)	1,157,760원 (교육청 지원)
담당(지원) 부서	교육청(학생생활교육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성인
3월~다음년도 2월 (1년, 일4시간)
25명
시급제(8,040원), 월급제(840,180원) ※ 2017년 기준
채용: 학교장(기관장) 예산지원: 노사협력담당관

○ 그러나 희망일자리 사업의 경우 중증장애학생들의 졸업으로 인해 매년 대상자가 교체되어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고, 단기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바 교육청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의 진로 확대와 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진로 확대와 일자리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동 조례안은 그 취지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상위법령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구성체계

○ 동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 총칙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교육청이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 이를 교육공무직 정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비장애인과 의 형평성을 반영하였고, 제5조는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 등 교육청 산하 각급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일자리 수요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는 교육감에게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수요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제7조에서

는 교육감이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 교육공무직 채용 등과 별개로 채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는 중증장애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보수교육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 점검, 상담 등을 위한 중증장애인사업모니터단을 구성·운영토록 하면서 제10조에서 우수한 모니터단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의 자활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과 「장애인 복지법」 등의 상위법령에 따른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실무」 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교육청도 동 조례의 제정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노사협력담당관-2387, 2017.11.1).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789호, 2017.4.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 2017.10.19.] [대통령령 제28369호, 2017.10.17., 일부개정]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2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진단서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7.9.19.] [법률 제14892호, 2017.9.19., 일부개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